

# 「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」 주간 개별 1:1 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모 공고

우리는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등 장애정도가 극심하여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, 파악된 욕구와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」 주간개별 1:1 지원 제공기관 지정을 추진합니다.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 공모를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비영리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. 5. 13.  
사천시장

## 1 사업 개요

### 1 지정개요

- 법적근거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
- 지정대상: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개별 1:1지원 사업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
- 지정주체: 사천시장
- 지정개소수: 1개소
- 지정기간: 2024. 6. 7. ~ 2027. 5. 31.

## 2 사업 주요내용

- (지원대상)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**80점 이상**인자  
- (신청자격)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·자폐성 장애인
- (제공서비스)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의미있는 낮활동 서비스를 1:1로 제공
- (제공기간) **최초 3년, 갱신신청을 통해 최대 5년**  
\*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, 갱신신청 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총 2회 (회당 1년) 연장 가능하며, 최대 5년간 이용 가능
- (제공요일) **월요일부터 금요일** (주말 및 법정공휴일 제외)  
- (제공시간) **10:00~17:00**
- (본인부담금)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음  
\* 제공기관은 필요시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수납 가능(식비, 프로그램 활동비 등)

## 3 제공기관 주요 역할

-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
-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
- 통합돌봄 제반 행정 업무(회계, 노무 관련) 수행
- 사업 모니터링·평가 시 협조 및 결과보고(제공기관 → 지방자치단체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)
-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획과 연계 운영
-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제출 및 인터뷰·설문 응답 등
- 사업홍보, 예산 집행 및 정산·결과보고

## 4 제공기관 지원예산

제공기관	단위	사업비	지원방식
사천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	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<b>1개소</b> (이용정원 4인)	<b>233,805천원</b> (국50%, 도15%, 시35%)	단년도 지급 (월 또는 분기별 교부 예정)

\* 추후 상황에 따라 사업비(예산)는 변동될 수 있음

**5] 제공기관 신청자격**

- **신청대상:** 최종중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,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**비영리법인**

※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의 허가·등록·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
 ※ 비영리법인이란, 사단법인, 재단법인, 특수법인(학교법인, 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 등) 등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

- 이용자 정원 4명의 제공기관 1개소를 운영 가능한 법인
- 시설 및 인력기준

구 분	내 용
시설면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활동공간) 이용자 4명당 33㎡ 이상의 활동공간을 전용으로 갖추어야함</b></li> <li>※ 활동공간이란, 10시~17시 동안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전용공간을 의미함.</li> <li>※ 사무실, 심신안정실, 기타 공간은 활동공간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, 활동공간은 타 사업 및 서비스와 공유 사용 불가</li> <li>○ <b>(심신안정실) 공간면적 6.6㎡ 이상의 심리안정실을 갖추어야함</b></li> <li>○ (사무실) 활동공간과 분리하여야 하며, 타 사업 사무실과 겸용 가능</li> </ul>
시설설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위탁, 무료임차, 자가, 전세, 월세 건물이어야하며 전전세, 전대차 등은 불가함</li> <li>○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</li> </ul>
시설공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활동공간)</b> 활동공간은 사무공간과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, 구성 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야 함</li> <li>※ 활동공간은 타 사업 및 서비스와 공유 사용 불가하며 아래사항을 참고 하여 최종중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구성해야 함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<b>&lt; 최종중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간 구성 원칙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안전을 위한 장비 구비 및 설치 필수(소화기, 문 잠금장치, 손 끼임 방지장치 등)</li> <li>- 벽 및 기둥의 모서리에 충돌방지용 안전장치 부착</li> <li>- 주요 활동공간에 CCTV 설치</li> <li>- 창문은 도난, 사고, 이탈 등의 문제행동에 대비한 보호장치 및 강화유리로 설치되어야 하며, 보편적으로 10~15cm 이상 열리지 않는 것이 안전함</li> <li>- 비상약품(밴드, 소독용품, 소화제 등) 및 간이 의료기구(혈압기, 체온계 등) 구비</li> <li>- 바닥은 온돌바닥을 권고하자 필요 시 딱딱하지 않은 매트 사용</li> <li>-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지벽 설치(벽, 바닥, 강화유리창 등)</li> <li>- 이용자 개인사물함 또는 프로그램용 물품 수납공간 별도 마련</li> <li>- 성인 장애인임을 감안하며 휠체어, 워커 등의 보장구 구비</li> <li>- 조명은 밝게 하되 눈부심이 없도록 하며 출입구나 복도는 넓게 계획함</li> </ul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심신안정실)</b> 심각한 도전행동 발생 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</li> </ul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신안정실은 상부까지 막힌 고정된 벽체로 구분된 공간이어야 하며 타 사업의 프로그램실과 겸용 불가함</li> <li>- 심신안정실은 이용자의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해야함</li> <li>- 바닥 및 벽면에는 안전매트 등 충격방지 설비를 권장하며 행동관찰을 위한 분리된 관찰실 또는 투명창 설치를 권장함</li> <li>-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무실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를 권장함</li> <li>○ (사무실) 제공기관은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야 하며 타 사업 사무실과는 겸용 가능</li> <li>※ 통합돌봄서비스 계약서류, 개인정보동의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·보관하므로 해당기관 종사자 외의 사람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</li> </ul>
시설안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용자 안전과 학대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함</li> <li>○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기준(노유자 시설)에 따라 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갖추어야함(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1 제1호 등 참고)</li> <li>○ 제공기관은 피난 통로 및 소방시설 주위에 장애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함</li> <li>○ 제공기관은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의 위험요소를 이용자의 장애유형과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지해야함</li> </ul>
인력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력은 사업관리자 1명, 제공인력 4명으로 상근해야함</li> <li>○ 주간개별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관리자 및 서비스 제공인력을 갖추어야하며, 각 인력은 인력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관리자 및 제공인력은 65세 이하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함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</li> <li>2)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(1급, 2급)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</li> <li>3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</li> <li>4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</li> <li>5)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</li> <li>6)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</li> <li>7) 「평생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</li> <li>8) 1)부터 7)까지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</li> <li>9)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</li> </ol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업관리자 및 제공인력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및 의료기관 발행진단서 제출 등</li> </ul>

※ 상기 공고문 내용은 추후 지침 확정 또는 변경 시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● **제출서류(원본 1부, 사본 6부 제출)**

제출서류 목록	비고
①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 공모 신청 공문	자유 양식
②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 1부	-
③ 법인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	-
④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1부	관련서식
⑤ 기관소개서 1부	관련서식
⑥ 수행기관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1부	관련서식
⑦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1부 <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> · 신청기관의 운영목표 및 비전 · 서비스(프로그램) 제공실적 및 제공계획 · 사업운영 방안 · 예산조달 방안(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) · 프로그램비 집행계획 및 구성안 ·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 등	관련서식
⑧ 토지 및 건물소유권(또는 사용권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건축물대장, 위치도, 평면도, 설비구조내역서 포함 - 평면도는 활동공간, 심신안정실, 사무실 등의 사업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명확한 표시와 공간면적(단위: m <sup>2</sup> )을 기재하여 제출)	
⑨ 시설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대장 - 활동공간, 심신안정실, 장애인편의시설, CCTV 설치 사진 등	
⑩ 인력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- 근로계약서, 자격증, 범죄경력조회 회신서, 경력증명서 등 포함	
⑪ 그 밖에 사업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	

※ 위 서류목록순으로 쪽번호 표기하여 양면인쇄(색지로 간지, 서류목록별 띠지 부착)

⑥ **추진일정**

- 공고기간: 2024. 5. 13.(월) ~ 5. 27.(월)(15일간)
- 접수기간: 2024. 5. 22.(수) ~ 5. 27.(월) 18:00 방문제출분에 한함
- 제출처: 사천시청 3층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
- 현장점검: 2024. 5. 28.(화) ~ 31.(금)(예정)
- 심사일정: 2024. 6. 4.(화) 신청기관 사업발표 및 질의응답  
 ※ 사업신청자는 현장점검에 적극 임하고 심사일 참석하여 사업발표 및 질의응답에 응하여야함. **심사일 불참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**
- 심사위원회 구성: 발달장애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5인 이상
- 심사기준: 제공기관 자격심사기준표에 따른 배점 부여 후 위원별 기준표 합산점수 평균이 가장 높은 1개소 지정(※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 위원별 합산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)

○ **제공기관 자격심사기준표(안)**

영역	평가항목	설명	배점
수행기관 적합성 (30)	1.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전문성	-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는가?	5
	2.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및 공간	- 시설은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였는가? - 사업수행을 위한 공간 규모를 확보하였는가?(활동공간 심신안정실 등) - 사업수행을 위한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있는가?	10
	3. 조직체계 및 인력	- 사업 운영 방안에서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및 인력은 수행기관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가? - 대체인력 활용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?	10
	4. 안전 관련 대응체계	- 안전을 위한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? -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준비되어 있는가?	5
사업계획 타당성 (55)	5. 사업 이해 및 추진체계	-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수행기관의 운영 원칙 및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가?	5
	6. 사업 운영 절차	- 이용자 초기면담, 오리엔테이션, 적응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가? - 사례회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? - 모니터링 및 전이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?	5
	7. 서비스 제공계획 구체성	- 제공되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? -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, 보호자 협력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?	15

	8.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	-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연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?	5
	9. 지역사회 네트워크	-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협력 기관이 있는가? - 지역사회 내 의료지원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가?	10
	10. 종사자 관리	- 종사자 구성, 종사자 근무 체계, 교육 등 종사자 고용관리 체계가 잘 구성되어있는가?	10
	11. 추진일정	- 월별 사업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?	5
예산 계획 타당성 (15)	12. 예산 집행계획	- 예산 집행계획의 산출 근거 및 항목별 비중이 적절한가?	10
	13. 자원 조달계획	- 예산 운영 방안에 자부담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가? - 기관 규모가 자원 조달이 가능한 규모인가?	5
총합			100

- 지정결과 발표: 2024. 6. 7.(금) 시홈페이지를 통한 공고
- 문의처: 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(☎055-831-2626)

## 7 기타사항

-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,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
- 모집공고, 지침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응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사천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최종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공고일 현재 기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 전까지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계획서가 존재해야 하며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(예: 선정 후 지침에 따라 구비 예정 등)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음

-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사천시의 고유권한이며,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
- 심사 결과는 시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 게재하며, 미선정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음
- 지정된 기관은 사업지정을 위하여 제출된 내용은 사업시행 중에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함
- 지정기간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발생은 기관부담임
  - 보건복지부장관, 도지사, 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
  - 사업수행 시 관련법령 및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지 않은 경우
  - 사업수행 중 시설, 인력요건 등에 중대한 하자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등
- 보건복지부, 사천시,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요구하는 매년 정기·수시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, 모니터링, 평가 등 관리·감독에 응해야 함

※ **공고문 내용은 추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**